#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

(2026. 1. 1. 기준)

## ■ 본인부담금

-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발생하는 급여비용의 일부를 수급자가 납부해야하는 금액입니다.

| 구분 | 일반대상자 | 40%감경대상자 | 60%감경대상자<br>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|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<br>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|
|---|---|---|---|---|
| 재가급여 | 15% | 9% | 6% | 면제 |

## ■ 월한도액

- 월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별로 한 달(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) 동안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한도 금액으로 월한도액을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경우, 초과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.

(단위: 원)

| 등급 | 월한도액 | 본인부담금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일반대상자 | 40%감경대상자 | 60% 감경대상자<br>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|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<br>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|
| 1등급 | 2,512,900 | 367,920 | 220,750 | 147,160 | 면제 |
| 2등급 | 2,331,200 | 346,890 | 208,130 | 138,750 | |
| 3등급 | 1,528,200 | 222,370 | 133,420 | 88,950 | |
| 4등급 | 1,409,700 | 205,270 | 123,160 | 82,100 | |
| 5등급 | 1,208,900 | 179,610 | 107,760 | 71,840 | |

## ■ 방문요양 급여비용(방문당)

(단위: 원)

| 급여제공시간 | 금액 | 본인부담금 | | |
|---|---|---|---|---|
| | | 일반대상자 | 40%감경대상자 | 60%감경대상자<br>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|
| 30분 이상 | 17,450 | 52,350 | 31,410 | 20,940 |
| 60분 이상 | 25,320 | 75,960 | 45,570 | 30,380 |
| 90분 이상 | 34,120 | 158,650 | 95,190 | 63,460 |
| 120분 이상 | 43,430 | 162,860 | 97,710 | 65,140 |
| 150분 이상 | 50,640 | 189,900 | 113,940 | 75,960 |
| 180분 이상 | 57,020 | 213,820 | 128,290 | 85,530 |
| 210분 이상 | 63,530 | 238,230 | 142,940 | 95,290 |
| 240분 이상 | 70,080 | 262,800 | 157,680 | 105,120 |